

계약규정

제정 2009. 8. 7. 규정 제 24호
 전부개정 2012. 5. 8. 규정 제125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2.11.21] [규정 제143호, 2012.11.21, 일부개정]
 [시행 2013.3.29] [규정 제154호, 2013.3.29, 일부개정]
 [시행 2013.11.4] [규정 제167호, 2013.11.4, 일부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의 계약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4>

1. “계약담당”이란 이사장 또는 계약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내규에 따라 계약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추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입찰여부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5. “제한경쟁입찰”이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을 말한다.
6. “지명경쟁입찰”이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수의계약”이란 이 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장기계속계약”이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계약 사무의 분장)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계약 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장한다.

1.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계약 중 수의계약(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각 부서에서 담당. 이 경우 각 부서의 계약담당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총괄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체결 관련 사항

나. 인력파견·도급 계약 관련 사항

2. 제1호 이외의 계약: 계약 총괄 부서에서 담당.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는 사업추진부서가 담당한다.

가.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협상에 관한 사무

나. 제81조에 따른 감독, 제82조에 따른 검사(제83조에 따른 검사조서의 작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다. 제86조에 따른 하자검사 및 제8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제8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라.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납(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 선금 지급 및 제101조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마. 제102조 및 제103조 관련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4]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계약 업무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등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5조(추정가격의 산정) 계약담당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개정 2013.11.4>

1. 공사계약의 경우 재단이 별도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유사한 계약의 금액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제6조(예정가격작성 및 비치) 계약담당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정가격의 생략)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76조에 따른 개산계약
4. 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의 의뢰에도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 예정가격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9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38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이사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에까지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외에 예정가격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4>

제11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공고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변경) 계약담당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41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3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③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150억원 미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한다): 2억 5천만원 미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재단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접수 등을 재단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등 특례) ① 계약담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친환경상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등 공공구매 촉진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시방서, 설계서 등에 계약조건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6항에 의거하여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정부권장관련

계약규정

생산품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 이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3.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생산품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춘 생산품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8. 그 밖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권장제품

[본조신설 2013.11.4]

제14조(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구매 및 계약의 위탁) ① 재단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고시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1〉

1.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재단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재단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재단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은 재단의 수요물자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④ 계약담당은 제품을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제5호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15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제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제17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계약규정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계약담당은 이 규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입찰자격요건의 증명) ① 제16조제3호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그 자격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②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 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20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유무 및 제19조에 따른 입찰자격요건 증명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미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 계약담당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이후 위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3조(입찰참가자격등록) ①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찰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명시하여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4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25조(공사의 입찰) ① 계약담당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사 종류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규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④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입찰 시 입찰서와

계약규정

함께 제출.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2. 제56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 종류별 입찰금액 사유서: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⑤ 제4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개정 2013.11.4>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음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단가를 적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제4항제2호의 공사 종류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적음

⑥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의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제27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 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게재함으

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③ 계약담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 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한다.

제2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청소 등 단순노무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

계약규정

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경매) ① 계약담당은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계약담당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4>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 3억원을 말한다)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고시금액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고시금액

7. 영 제33조에 따른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계약담당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 1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을 말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계약담당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이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

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3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계약담당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해당 경쟁참가자격자에게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4>

제34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제40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0.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계약담당은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공사

-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
-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제36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은 제34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지명경쟁입찰의 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계약담당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8조(희망수량경쟁입찰) ① 계약담당은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다량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경우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공급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이 2종 이상의 물품에 관한 것인 경우 물품

종류별 수량 및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입찰공고 사항
3.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재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2.11.21, 2013.11.4>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삭제 <2012.11.21>
 - 라. 삭제 <2012.11.21>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명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삭제 <2012.11.21>
 -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일반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 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나. 삭제 <2012.11.21>
-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삭제 <2012.11.21>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사. 삭제 <2013.11.4>
6. 그 밖에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경우
- ② 계약담당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제41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 또는 지명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명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 또는 재지명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재단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42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계약담당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 제42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물품 제조나 구매의 경우 : 해당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 계약 체결
2. 물품 매각의 경우 : 해당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 체결

제44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3.11.4>

1. 제40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다목,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4>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일반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담당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④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목개정 2013.11.4]

제45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4>

제4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계약담당은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제2호, 제3호 가목부터 마목, 제4호 가목부터 라목 또는 제5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7조(입찰계획) ① 사업추진부서는 입찰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직제규정」에 따른 계약 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② 계약담당은 입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계획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11.4>

1. 대기업 참여 하한 대상 사업 해당 여부
2.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사업 해당 여부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여부
4. 불공정 하도급 개선과 관련된 사항

③ 계약담당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11.4>

1. 입찰평가에 있어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관련 내용

④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4>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목개정 2013.11.4]

제48조(입찰공고의 방법)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2013.11.4>

제50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6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51조(입찰공고의 내용) ①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제6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의 재단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결정방법(제5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제54조제1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제53조제1항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15. 제5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6. 제77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7.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계약담당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지정한 누출금지정보
 18. 그 밖의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협약서 제출,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해지·해제가능 등의 내용을 제1항의 입찰공고에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입찰 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계약규정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등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53조(입찰서의 제출·접수) ① 계약담당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54조 및 규칙 제4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단순 착오로 가격 견적기준에 경미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 한하여 기 제출한 입찰서를 보완하여 수정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그 밖에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

② 계약담당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4>

제55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계약담당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

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전차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5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이므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재단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11.4>

⑦ 계약담당은 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사 종류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규정

⑧ 계약담당은 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낙찰여부, 낙찰기준 및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유 및 기준을 재단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만족도 및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여 향후 입찰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11.4>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 등 표시서를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60조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9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56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56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서식 2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등

계약규정

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⑤ 계약담당은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제62조에 따른 재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별지서식 3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① 계약담당은 제61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급이 확약된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재단 귀속에 관한 사항을 영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그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재단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 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재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게재함으로써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 계약담당은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 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및 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⑥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위해 재단 직원과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제안서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⑧ 재단의 고유사업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직원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4>

⑪ 계약담당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협상적격 여부 및 기준, 협상순위, 기술 및 가격점수 등을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4>

제65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계약담당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절 계약의 체결

- 제66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별지서식 4부터 6까지의 표준계약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재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특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입찰서의 접수 시 또는 사업설명회 개최 시에도 사전에 청렴계약 및 보안제도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승인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징구하고 검토·승인하여 불공정 하도급 사례 원천 방지하도록 하되, 그 밖에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13.11.4>

1. 인감을 날인.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인감(사용인감계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날인
3. 서명(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13.3.29>

제67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계약당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2.10.31>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당당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1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관행에 비추어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규정

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61조제3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61조제3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1조제5항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9조(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①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재단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0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56조제5항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1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회계연도개시전의 계약) ① 계약담당은 임대차, 운송·보관 그 밖에 그 성질상 중단

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계약담당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 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 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 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5조(단가계약) 계약담당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이

하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6조(개산계약) ① 계약담당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이하 “개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공동계약) ① 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공동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입찰참가자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계약담당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4〉

제2절 계약의 착수 및 보고

제78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재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신원보증서, 보안확약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서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9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재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 대책 등을 포함한다)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재단의 협조사항
4. 신원보증서, 보안확약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7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4〉

제80조(공사 계약 시 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그 밖에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재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절 검사

제81조(감독) ① 계약담당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2013.11.4>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

②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2조(검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2013.11.4>

②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101조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검사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조서의 작성 및 생략)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각각 별지서식 7의 감독조서 또는 별지서식 8 및 9의 검수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목개정 2013.11.4]

제84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8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8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85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각 공사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86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은 제8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3.11.4>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공사 종류(각 공사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 종류를 말한다)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일반건축 공사: 100분의 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8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6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61조제3항·제5항 및 제62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재단귀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계약담당은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재단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① 재단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4>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재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6.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계약규정

7.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영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영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9.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5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제64조제6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및 제11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3.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 정당한 이유 없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제56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8. 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9.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2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계약담당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②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6조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재단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재단은 제89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대가의 지급 및 계약의 이행

제9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3.11.4>

② 용역계약 시 대가는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서(하수급인

계약규정

이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된 것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계약 상 하수급인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제2항에 따른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을 포함한다) 및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2항 또는 제5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⑨ 공사계약의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0조를, 물품구매계약의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4>

제92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2.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3조(대가의 수납) ① 계약담당은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4>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제 비용 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재단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담당은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제94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사무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4>

제95조(선금의 지급 범위 등)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을 말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재단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

2. 제8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계약규정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④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같은 법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법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1.4>

⑦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자금사정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동 사유 해제 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계약담당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 ㉢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6조(채권 확보)** ① 계약담당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99조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제98조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98조에 따른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규정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을 말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9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⑥ 계약담당은 제9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97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한다)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② 계약담당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96조제1항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text{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text{계약금액}]$$

제99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제100조에 따른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하루를 기준으로 이율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4>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2013.1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제100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1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용역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한 것을 말한다)를 재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3.11.4>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

계약규정

일 등을 포함한다)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91조제4항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⑦ 공사계약의 기성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4>

제102조(하도급의 승인 및 관리) ① 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용역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재단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에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이 계약당사자에게 제4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재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103조(하도급대금 지급확인) ① 계약담당은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91조 및 제

101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말한다)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재단에 통보(「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91조제3항 또는 제10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를, 물품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4>

제10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제조·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규칙 제7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규칙 제7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규칙 제62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4>

④ 계약담당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계약담당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05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1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1.4>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1.4>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함.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재단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6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제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3.11.4>

② 제105조제6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계약규정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재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제10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재단은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재단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1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를 말한다)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08조(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07조를 준용하되, 계약담당은 자신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제10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 제안 시에는 별지서식 10의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함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예는 제11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3.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서식 11의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에 기록하고 관리함
4.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를 따름

제109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계약의 주요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액 또는 품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담당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계약담당은 제104조부터 제106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담당은 제112조제2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게 하고,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함께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2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0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68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재단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⑧ 계약담당은 시설관리, 전산유지보수 및 부동산 임대차 등 계약성질상 일정기간의 연속성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상대방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거절 또는 계약내용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조건은 최초 계약 시 상호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112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1.5(소프트웨어 계약으로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5
4. 운송·보관: 1000분의 5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을 말한다)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재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 이행기간 내에 재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인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당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당은 제112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68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제6장 보칙 <신설 2013.11.4>

제114조(연간 계약계획 수립 및 계약실적 보고) ① 계약당당은 매연도 초 부서별 계약 사전 조사를 통해 연간 계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당은 전년도 계약실적에 대해 다음 년도 초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당은 계약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부서별 수의계약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5조(청렴계약 이행) ① 계약당당은 공사·물품·용역입찰 시 재단 소정의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정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 시 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청렴계약 관련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당당은 동 조건에 따라 계약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④ 계약당당은 계약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한다)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⑤ 계약담당은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공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및 업체선정경위 및 기준을 성실히 안내하고, 입찰과정에서의 만족도 및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입찰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6조(계약심의위원회)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계약 기본계획(유사 계약의 통합 및 계약의 효율성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의 수립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다만, 간단한 사항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계약담당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계약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1)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2) 제41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제56조제8항에 따른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 있어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5.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제10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증액 조정

7. 제108조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

8. 제115조제2항에 따른 청렴계약 관련 조건의 위배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9.>

1. 업무지원실장

2.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부서장 3명

④ 계약담당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11.4]

제11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 총괄 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에 대해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1.4]

제117조(계약내역 공개) 계약담당은 5백만원 이상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사무규칙 제 8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사유, 계약방법 등 세부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제118조(단순노무용역 시 근로자 보호) ① 청소 등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의 평가 시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항목을 포함하되, 적정 임금수준 지급, 포괄적 재하청 금지, 법정부

계약규정

담금 지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② 제1항의 경우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부문 보통 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은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단법인 건축물유지관리협회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시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보호, 정보공개, 임금명세서 제출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외주근로자 보호확약서 이행여부 관련서류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향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제119조(징계 등) ① 재단은 계약담당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재단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부당히 사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계약담당이 불법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3호, 201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4호, 2013.3.2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7호, 2013.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제1호 중 “인력개발부장”을 “인사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 중 “상임이사”를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 “인사부장”을 “업무지원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별지서식 1]

<p>(일 반) (제 한) 경쟁입찰참가통지서 지 명</p>				
입찰참가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찰건명			
	현장설명	일시 :	장소 :	
	입찰	일시 :	장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 까지		
	서류제출처	(전화번호 :)		
<p>우리 재단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장학재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이사장 또는 성명 (인) 계 약 담 당</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_____ 귀하</p>				

22221-202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처리시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 (지명) 공고 번호	제 호	입찰 일자
	입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국장학재단의 「○○○○○○○○○○○○○○○○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p> <p>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별지서식 5]

(앞 쪽)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내용	용역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W)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W)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W)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p>이사장(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 1. 기술용역입찰유의서 1부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1부 6.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특약서 각1부 7. 과업내용서 1부 8. 산출내역서 1부</p>		
이사장 또는 계 약 담 당		(인)
계 약 상 대 자		(인)

[별지서식 7]

공사감독자(기성부분 준공)감독조서

공 사 명 :

년 월 일 과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시 현장 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검사까지의)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의 %가 기성 되었음을 인정함.

준 공

년 월 일

공사감독자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 하

[별지서식 8]

(물품 · 용역) 검수조서

계약일자	20 년 월 일	계약번호			
납품이행기한	20 년 월 일	지체일수	일간		
아래 물품(용역)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이행)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대표자)		아래 물품(용역)은 검사결과 합격판정 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검 사 (소 속) 계약담당 (성 명)			
아래 물품(용역결과)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물품운용관 : (소속) (성명)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별지서식 9]

(공사)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

20 년 0월 0일 준공
20 년 0월 0일 000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00년 0월 0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0월 0일

준공검사관 0 0 0 (인)

입 회 원 0 0 0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 하

[별지서식 10]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능요구 <input type="checkbox"/> 성능요구 <input type="checkbox"/> 품질요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FP/LOC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input type="checkbox"/> 승 인 <input type="checkbox"/>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11]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번호	추진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기한	처리일